

보도시점 2025. 9. 28.(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9. 26.(금)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 전국 집중 단속 돌입

-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대응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 가능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최근 2년 이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연휴기간에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이며 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개요.
2.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1-6160)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 배 경

- “추석”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소홀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기간 : '25. 9. 29 ~ 10. 14(16일간)
- 중점 감시·순찰대상 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오염우심지역(산단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화력발전소 등
 -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단계별 추진일정

- 연휴 전(9.29~10.2.)
 - 중점 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 환경오염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특별단속
 - 간부 공무원(과장급 이상)의 주요시설 현지점검
- 연휴 중(10.3~10.9.)
 - 산업단지 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128) 운영
- 연휴 후(10.10~10.14.)
 -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00도(00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2025.9.29~10.14)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128)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 ※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폐기물처리업자)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분뇨, 가축분뇨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2. 환경오염신고(☎128)로 신고할 경우 어디로 연결되는지?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지자체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지역별 상황실 담당자에게 접수·처리됨